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2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보장유형
무배당 ①지킴이 ②) 안심③)보험④)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
	재해장애보장
	교통재해 장애보장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
	재해사망보장
	교통재해 사망보장
	특정사고 사망보장
	5대골절 수술보장
	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
	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
	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
	식중독 입원보장
	환경성질환 입원보장
	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
	강력범죄보장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장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②), ③) 또는 ④)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년, 2년, 3년	일시납	만 15세 ~ 80세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영업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의 영업보험료로 구성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상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특정사고 사망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한다.

나. 이 상품이 제휴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기업(계약자)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고객, 회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특정사고 사망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따라 운용되고 한 계약자에 의해 다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약이 이뤄질 때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연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제후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나' 및 '다'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외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정액형보험 가입쿠폰' 운영방법

- 계약자는 CM채널에서 판매하는 '정액형보험 가입쿠폰' 대상 상품(회사가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CM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정액형보험 가입쿠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정액형보험 가입쿠폰'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은, 「약관 제8관 '정액형보험 가입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입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 20조(위험 고지 의무)에 따라 '정액형보험 가입쿠폰'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해당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에 따라 '정액형보험 가입쿠폰'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한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